

2026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28분 완성

도서명 : 가축전염병예방법

ISBN : 979-11-7393-086-7

발간일 : 2025-10-10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9,000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가축의 방역(p45)

제3장 수출입의 검역(p94)

제4장 보칙(p122)

제5장 벌칙(p143~155)

[약어]

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포함),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장관등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국립기관장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기관장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검역기관은 동물검역기관

기관장은 동물검역기관의 장

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대책은 전염병 예방과 관리대책

소유자등은 (별도 명시 없으면)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업자는 방역위생관리업자

축산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자

가금업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사육농가는 계약사육농가

방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방역관은 가축방역관

방역사는 가축방역사

방역관등은 방역관, 방역사

실시기관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질병병원체는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회피)

소독설비등은 소독설비, 방역시설

쇠고기/제품은 쇠고기, 쇠고기 제품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10조

1. 목적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 막음
- 축산업 발전, 가축 건강 유지,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

2. 정의

가. 가축은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 고양이,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 사육 동물중 전염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나. 가축전염병

1) 1종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2종은

-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해면상뇌증,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병아리흰설사병), 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바, 애눌라타만
해당), 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보비스만 해당), 아나플라즈마(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馬웨스트나일열,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
낭충봉아부패병

3) 3종은

-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에프낭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다. 검역시행장은 지정검역물을 검역 하는
장소

라. 면역요법은 특정 전염병 예방/치료 목적으로 농장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 똥 등을 가공해 그 농장 가축에 투여

마. 병성감정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으로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바. 특정위험물질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사.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장관 고시 전염병 매개체

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하 관리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방제

자. 기타

- 화물주는 대리인 포함
- 반송은 제3국으로의 반출 포함
- 소각/매몰등은 소각, 매몰,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
- 살처분등은 살처분,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3. 국가등의 책무

가. 시도지사, 시군구는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포함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

1) 전염병

- 예방, 조기 발견, 신고 체계 구축
- 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 수립/시행
- 예방/관리 사업계획, 추진체계
- 비상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발생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 개발/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2) 가축방역

- 관계 기관과 협조대책
- 교육/홍보
- 정보 수집/분석, 조사/연구
- 전문인력 육성
- 살처분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사후관리

- 기타 시책

3) 가축 살처분등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 포함

나. 시군구는 가축 사체, 물건 매몰에 대비해 부령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 요

다. 장관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 보강 지원 강화 요